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 신설〉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38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 신설(안 제28조의 3 신설)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7.
3. 회부연월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나 실행기관인 산하기관은 범죄사실을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음.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현실적으로 인지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조세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3(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쳐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자료의 처리·보관 및 파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자료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은 중소기업부장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의 자격 여부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조세범죄나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하여 국세청, 경찰청, 법무부 등 정보 보유 기관과의 유기적인 자료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부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

1) 오세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부 스타트업, 1억원 부정수급...중기부 '모르쇠'", 머니투데이, 2025. 10.12. (<https://www.mt.co.kr/economy/2025/10/12/2025101208172543520>)

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①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 ③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관계기관 간 자료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허위 증빙 등을 통한 부당한 지원금 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원금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요청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 제28조의3제1항제1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를 명시하고 있음.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²⁾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³⁾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원

2)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징수이나 조세법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칙적으로 비공개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라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같은 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 대상 자료로 규정하고 있음. 포괄위임금지 원칙상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사항은 법률에서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이 그 대강을 예

-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징수를 하거나 조세법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조세의 불복·징수, 조세법 소추, 범죄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측할 수 있어야 하는바, 요청 대상이 되는 범죄 및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의 범위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같은 항 제3호는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같은 항에서 요청 상대방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과 함께 해석할 경우,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되는 것으로, 수범자로서는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어느 기관에 의해 공유되는지를 법률을 통해 예측하기 어렵게 되어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 제1항 각 호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요청 대상 기관을 한정하고 각 기관별 제출 자료의 목록을 법률에 직접 열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 요청 대상 및 범위를 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법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음.

[표 1] 자료 요청 등 관련 입법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법인·단체·민간기업체의 장

4.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플랫폼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각 관계부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기반하여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해당 자료 보유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게 되는 경우 부정수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의 의미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세청은 개정안이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법률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구기관·이용목적·요구정보·대상기관을 명확히 한정하여 제공 요청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이 불명확하고 요구 대상 지방세 과세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제공 요청 대상 정보 중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는 삭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경찰청은 개정안에 따른 자료 조회·제공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경우 사전에 경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